

보도참고자료



보도	2018.9.14(금) 배포시	배포	2018.9.14(금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 진 창(02-2100-2830)	담 당 자	윤 덕 기 사무관 (02-2100-2835) 김 경 호 사무관 (02-2100-2836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진 석(02-3145-8020)		김 부 곤 팀장 (02-3145-8040)

제 목 :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위한 「금융권 실무자 간담회」개최

- □ 금융위-금감원은 旣 발표(9.13일)된「주택시장 안정대책」이 일선창구에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, 全 금융권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
 -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취지와 금일 시행된 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, 일선창구의 준비상황, 향후계획 등을 점검
 - ※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이 일선창구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<u>금융위·</u> 금<mark>간원-업권별 협회-금융회사간 상시점검체계 구축·운영</mark> 예정
 - → **창구 특이동향**. 주요 민원사례 등을 집중점검하여 필요시 업권간 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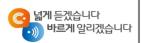
[금융권 실무자 간담회 개요]

- (일시 / 장소) '18.9.14(금) 10:00~12:30 / 은행연합회
- (참석) 약 50명
- 금융위·금감원 담당팀장 등
- 은행연합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여신금융협회, 저축은행중앙회, 상호금융권 신용부분('농협, 새마을금고, 신협) 담당자
- 시중은행 여신담당 실무자
- ※ 붙임: 9.13대책 금융부문 관련 주요 FAQ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붙임

9.13대책 금융부문 관련 주요 FAO

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등 강화는 1 「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」에만 적용됩니다.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등 강화는 2 「지역 구분없이 전국」에 적용됩니다 주택구입 목적,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**주택담보대출 LTV** 3 기준 등 강화는 「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」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.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신규주택 구입(2채→3채→4채)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, 「생활안정자금 목적」의 주택 4 담보대출은 허용됩니다. < 생활안정자금 한도제한 및 LTV 기준 관련 > 금융회사 「여신심사위원회의 특별승인」을 받으면 연간 대출 5 한도(1억원)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고, 2주택 이상 세대는 LTV 비율 최대 30%를 40%로 확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전세보증 규제강화와 관련하여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2주택 이상 세대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「2년 이내에 처분,하는 조건*으로 만기가 연장되며, 이 경우 소득요건도 6 적용하지 않습니다. * (예) 현재 이용중인 전세보증이 '18.9.25일 만기가 도래하는 2주택 소유자 ☞ 주택 2채 중 1채를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기연장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는 새로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미 「거축되어 7 **있는 주택**」을 **담보로 임대업 대출**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임대업 대출 관련 LTV 규제강화, 고가주택 구입제한은 8 「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」에만 적용됩니다. 기존에 임대업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업을 영위 하는 한 기존 대출에 대해 「LTV 기준(40%)을 적용하지 않고」 9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. 실수요자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예시된 사유에 적시되지 않아도 동 사유와 「유사한 사유로 명백히 입증」되는 경우 금융 10 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실수요가 인정됩니다.